

중소건설사 맞춤형 투자펀드 구성 등 정책지원 늘려야

국토부, 부실기업 '先구조조정-後 금융지원'
선순환 생태계 구축 나서



원정호
건설경제신문 금융부 기자

산업 구조조정이 우리 경제의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건설업을 둘러싼 금융과 자금조달 환경에도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묻지마식 금융지원'보다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서두른 다음 건설한 건설사에 금융의 물꼬를 터줘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래야 경쟁력 있는 건설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년째 건설업은 조선·해운·철강·유화와 더불어 취약업종으로 꼽히고 있다. 국내 건설시장 규모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인데 비해 종합건설업체 수는 1만개가 넘는 등 과잉이기 때문이다. 국내 건설투자는 지난 2009년 208조원이던 것이 지난 2014년 198조원으로 내리막길이다. 시장 규모가 감소하다 보니 건설업계의 영업이익률과 이자보상비율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

이에 신용평가기관들은 건설업 신용등급을 해마다 낮추고 있으며 금융기관들은 건설업 종에 대한 자금지원을 줄이는 추세다. 단지 건설사란 간판 탓에 은행권 여신 심사의 문턱이 넘기가 쉽지 않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유동성 위기가 강타할 때는 '전체 건설업종 구하기'가 통했다. 대형 건설사, 중소 건설사 가릴 것 없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자 정부의 문을 두드리고 자금지원을 호소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대출만기를 유예해 주는 '대주단 협약'부터, 건설사 지원용 시장안정 유동화증권(P-CBO), 회사채 신속인수제, 부실 PF 사업장 정상화뱅크 등의 대책을 잇달아 시행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대형 건설사들은 혹독한 구조조정을 치렀다. 지금도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중 15개사가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밟고 있다. 그러나 일부 중소 건설사들은 정책성 자금으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이 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줄어드는 시장 규모에 맞춰 상시적 구조조정과 함께 정상 기업의 부실화 방지를 위한 금융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한다. 부실 건설사는 퇴출되고 우수 건설사는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건설업에 대한 금융권의 우호적인 인식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상황 변화는 P-CBO 지원 방식에서도 엿볼 수 있다. 금융위기 이후 자금난을 겪는 전체 건설사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건설공제조합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손실을 떠안으면서 P-CBO가 시행됐다. P-CBO는 신용도가 낮아 채권시장에서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어려운 기업의 회사채를 모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덧붙이고 신용도를 높여 신규발행을 지원



기고

하는 제도다. 조합은 P-CBO의 후순위채 인수금액 750억원을 편성했는데 대부분 회수하지 못하고 손실 처리하고 있다. 이에 지금은 일반 조합원들이 부실 건설사를 왜 지원하느냐며 반대했고 조합도 이를 수용해 조만간 P-CBO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선 구조조정 후 자금지원’으로의 변화는 정부의 건설사 옥석가리기 정책과도 맥을 같이 한다. 국토교통부는 연초 업무보고에서 “운에 좌우되는 적격심사제의 변별력 향상을 위해 평가기준을 개선하고 발주자의 실질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사실적관리를 세분화하고, 부실기업 조기경보시스템의 적발기능을 강화하는 등 부실기업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격심사를 ‘로또’로 여기고 당첨 가능성에 기대를 걸며 임시 사무실을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가 적지 않다”면서 “이런 부실기업을 먼저 퇴출하고 잘하는 업체에 금융을 지원해야 건설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등록증을 불법 대여하거나 자본금 등록기준이 미달된 업체에 대한 실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적발된 업체는 영업정지나 등록 말소가 이뤄진다.

건설공제조합의 보증 지원도 부실기업 퇴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과도한 저가공사에 대한 보증을 거부하고 부실기업의 고액보증에 대해선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다. 또 보증서를 발급할 때 기업 신용도에 따른 수수료나 보증한도 차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부실 건설사 속아대기가 어느 정도 가시화 되면 정상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확대돼야 한다. 연간 수조원에 이르는 중소기업청의 정책자금 지원에 건설업종은 소외받고 있다.

중기청은 건설업을 정책자금 용자 제외대상업종으로 규정하고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다. 담보력이나 신용도는 없지만 기술력이 있는 우수 중소 건설사들이 자금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중기청에 건의했고 지난해 2개를 포함해 모두 6개의 전문건설업종이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차제에 ‘중소기업자금 등 중소 건설업을 위한 금융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기술금융 활성화와 창업·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2조4,000억원 규모의 ‘성장사다리펀드’를 설립한 것처럼 국토부도 건설사 지원에 특화된 정책 펀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업종 독자적으로 미래 성장동력분야를 선정하고 해당분야별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또는 투자금융 활성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설기술연구원이 건설기술에 대한 잠재력과 가치를 평가하고 은행이나 펀드가 이를 토대로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다. 빈재익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새로운 공법을 적용하는 혁신형 중소 건설기업에 지분을 투자하는 벤처캐피탈이나 펀드 설립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이 같은 움직임이 물밑에선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국토부는 중소건설사 투자펀드를 만들기 위한 시드머니를 위해 예산을 편성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국토부는 일단 예산 책정에 성공한 뒤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재원을 합쳐 펀드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어 기술력이 있거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 건설사를 대상으로 심사해 자본금 투자, 선순위 및 후순위 대출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윤리강령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윤리강령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는 공제기관으로서 조합원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업계의 공동이익과 가치증진 실현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합 임·직원 모두의 마음가짐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언제나처럼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조합은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다음의 윤리강령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가. 윤리강령

우리 조합은 투명하고 깨끗한 경영으로 건전한 기업 가치를 향상시키고,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의 생활안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설분야 투명사회 협약에서 정한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

우리 조합은 조합원의 신기술 개발, 기술력 향상 등 설비건설기술 함양을 적극 지원하고, 고객만족 서비스 실천과 조합 경쟁력 강화의 경영목표를 실현하여 고객성공과 조합성장의 공동발전 경영을 추구한다.

우리 조합은 국내외의 모든 법규와 시장 질서를 준수하여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솔선하고, 부정행위 방법과 부패한 수단에 의한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다.

이에 우리 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신뢰받는 선진 조합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자발적인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적극 실천하여 선진 건설문화 창달에 노력한다.

나. 고객에 대한 기본윤리

- 조합은 조합원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조합원과 상호 신뢰를 구축하며, 조합원의 권리 보호 및 이익을 위하여 노력한다.






윤리강령



- 조합은 모든 조합원에 대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하고, 항상 전체 조합원의 이익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며, 일부 조합원의 이익이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 조합의 회계자료는 일반적 회계원칙에 따라 기록·관리하고,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투명하게 제공하며, 경영정보를 관련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공개한다.
- 조합은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 조합은 고객의 이익과 정보를 보호하고, 고객에게 부당한 요구나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을 준수한다.
- 조합은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다양한 사회 공헌을 통하여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다. 임직원의 기본윤리

- 임직원은 조합의 경영이념 및 Vision을 공유하고 조합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공감하여 조합업무 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 임직원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의 임직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명예롭게 행동하며, 조합 내의 상하 및 동료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직장문화를 창출해 나간다.
- 임직원은 주어진 직무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관련 법규와 조합의 규정을 준수한다.
- 임직원은 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임직원 상호간에도 과도한 선물 및 향응을 수수하지 아니한다.
- 임직원은 조합의 재산을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며, 조합에서 얻은 정보로 영리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임직원은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육체적·언어적·시각적 행동 등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는 일체의 언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개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견해는 존중되나 조합 내에서 정치활동을 하지 않으며, 조합의 조직 및 재산을 부당하게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안내

1. 보증 개요

□ 추진경위

- 건설업체의 경영악화, 부도 등으로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자 보호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도 시행
- 이에 따라 조합도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조합원이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제도 시행

□ 보증 대상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공 및 민간 건설공사
 - 우리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업종에 한해 발급
 - 수급인 및 하수급인, 법에 의한 재하도급 계약도 발급대상에 포함
 - 전기, 통신, 소방 공사 등 타 법령에 의한 공사는 보증대상에서 제외
- 최대 4개월치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을 보장
- 보증대상 기계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27종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스캐리퍼, 덤프트럭, 기중기, 모터그레이더, 롤러,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벙칭플랜트,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살포기, 골재살포기, 쇄석기, 공기압축기, 천공기, 향타 및 향발기, 사리채취기, 준설선, 특수건설기계, 타워크레인

□ 보증 면제대상

-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공사
-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 1건 건설기계 대여계약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 동일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는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
- ※보증서 미제출시 행정처분 :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000만원



II. 보증 신청

□ 보증신청

- 계약 체결
 - 한도거래용 보증채무약정
- 제출서류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신청서
 - 건설기계 대여계약서 사본
 - 당해 공사계약서 사본
 - 납세증명서
 -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지급조건 등에 대한 서류사본
 - 건설기계 대여계약 관련자 현황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III. 기타사항

- 도급금액 산출내역 명시
 - 도급계약 당사자는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
 -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초과금액을 정산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
- 용자한도와 연계
 - 용자를 이용중인 조합원은 일부 용자금 상환후 보증서 발급(지급보증 한도가 부족한 경우)

참고) 건설기계의 범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건설기계명	범위
1. 불도저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2. 굴삭기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삭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3. 로더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
4. 지게차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를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을 제외한다.
5. 스크레이퍼	흙·모래의 굴삭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도 안내

건설기계명	범위
6. 덤프트럭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된 것을 제외한다.
7. 기중기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 다만, 궤도(레일)식인 것을 제외한다.
8. 모터그레이더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9. 롤러	1. 조종석과 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 피견인 진동식인 것
10. 노상안정기	노상안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1. 콘크리트벙칭플랜트	골재저장통·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것으로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12. 콘크리트피니셔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3. 콘크리트살포기	정리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4. 콘크리트믹서트럭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재료의 투입·배출을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된 것을 포함한다)
15.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배송능력이 매시간당 5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과 트럭적재식인 것
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골재공급장치·건조가열장치·혼합장치·아스팔트공급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17. 아스팔트피니셔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8. 아스팔트살포기	아스팔트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9. 골재살포기	골재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0. 쇄석기	20킬로와트 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21. 공기압축기	공기토출량이 매분당 2.83세제곱미터(매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기준) 이상의 이동식인 것
22. 천공기	천공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3. 향타 및 향발기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 헤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5톤 이상인 것
24. 사리채취기	사리채취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25. 준설선	펌프식·바켓식·딛퍼식 또는 그레브식으로 비자항식인 것. 다만, 해상화물 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법」에 따른 선박으로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26. 특수건설기계	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규정 및 제27호에 따른 건설기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27. 타워크레인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정격하중 3톤 이상의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해외건설공사 보증서 발급안내

I. 발급안내

해외건설공사 보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최근 변경사항

1. 보증계약 신고대상
“조합원의 해외현지법인과 국내기업의 해외건설공사에 대한 보증서 발급 시” 추가
2. 보증계약 신고시기
“보증서 발급 전 · 공사계약 이후 최대 1개월 이내”에서 “보증서 발급 전”으로 변경

II. 보증서 발급유형

- 조합원 명의 보증서 발급
 - 조합원(해외지점 포함)이 국내기업 또는 동기업이 설립한 해외현지법인 또는 외국기업과 계약하는 경우
- 해외현지법인 명의 보증서 발급
 - 조합원의 해외현지법인이 국내기업 또는 동기업이 설립한 해외현지법인 또는 외국기업과 계약하는 경우

III. 공통 확인사항

- 보증서 발급 유의사항
 - 신용등급 및 보증한도, 보증수수료 요율 등은 기존 조합원 업무기준 적용
 - 고액보증심사 대상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심사 진행
 - 해외공사에 관한 구매 · 조달도 조합보증대상에 포함



해외건설공사
보증서 발급안내

□ 징구서류

- 계약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착공계, 내역서
- 보증채권자가 현지법인인 경우 국내기업이 설립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인터넷 등]
- 보증채권자가 외국기업인 경우 법인 설립 인가증(Certificate of Incorporation)등의 실체확인서류
- 기타 보증심사에 필요한 서류 : 한국은행 신고(허가)필증 원본 등

IV. 해외건설공사 보증방법

1. 조합원의 해외현지법인 보증방법

□ 발급자격

- 조합 신용등급 BB등급 이상
 - B등급 이하 조합원은 '조합담보규칙'에 따라, 보증금액에 해당하는 담보 제공 필요 (※세부사항: 지점상담)
- 해외건설협회에 신고된 법인일 것(정관 제47조 제1항 제16호 근거)
 - 해외건설협회(www.icak.or.kr) ⇒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 해외현지법인설립신고 ⇒ 현지법인 현황 (※[붙임1] 참조)
 - ※ 현지법인이 존재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지점으로 표기되어 있더라도 해외현지법인으로 간주
- 출자비율 기준 49%를 충족할 것
 - 50%이상 출자가 원칙이지만 '현지법상 제한' 및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조합원의 지배력'등을 고려하여 49%이상 출자를 기준으로 함
 - 조합원이 해외건설협회에 제출한 현지법인설립(인수)신고서의 투자비율로 확인하고, 현지법인설립(인수)신고서는 사본 징구 또는 인터넷 출력물로 대체가능

□ 한국은행 신고

○ 신고근거

- ◎ 외국환거래규정 제7-19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거래 또는 비거주자간 거래에 관하여 거주자가 채권자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와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외국환거래규정 제7-17조 (신고의 예외거래)
 - 1호 : 거주자(채권자)와 거주자(채무자)의 거래에 대하여 다른 거주자가 외국 통화표시 보증을 하는 경우
 - 6호 :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물품의 수출, 수입 또는 용역거래를 함에 있어서 보증을 하는 경우
 - 11호 :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 물품수출거래를 함에 있어 당해 비거주자와 보증 등을 하는 경우

○ 신고주체

- 보증서 발급 관련 : 각 지점 또는 사무소 (조합원사 대리신고 가능)
- 공동약정 관련 : 조합원사

○ 신고대상

계약당사자	보증채권자	조합 → 한국은행 신고	조합원 → 한국은행 신고
조합원의 해외현지법인	국내기업	○	○
	국내기업의 해외현지법인	○	○
	외국기업	○	○

- 「조합원의 해외현지법인」과 「국내기업 또는 동기업이 설립한 해외현지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해외공사계약에 대한 보증으로서 해외현지법인 명의로 발급 가능한 입찰, 계약, 하자보수, 선금금 보증

※ 현지법인 명의 보증서 발급을 위하여 조합원과 조합원의 해외현지법인이 공동으로 조합과 개별거래용 채무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조합원도 공동약정에 관하여 한국은행에 별도의 보증계약 신고 필요

○ 신고시기 : 조합과 개별거래채무약정 체결 이전

※ 사후신고(보증서발급 후)시 금융감독원에서 외환금융거래에 대하여 제재조치 발생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위반).

해외건설공사
보증서 발급안내

- 신고방법
 - 한국은행 본점 또는 지역본부 방문신고(우편신고 불가)
 - 단, 「한국은행 신고(허가)필증 우편 송부 신청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고필증을 우편으로 받을 수 있음
 - 처리기간 : 3일 (심사 시 필요자료 추가요구 가능)

○ 준비서류 : [붙임2] 참조

조합	조합원
① 보증계약 신고서 2부	① 보증계약 신고서 2부
② 보증사유서 1부	② 조합원의 재무제표 및 해외직접 투자법인의 연간보고서
③ 실체확인 서류 각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 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직인확인증) ◎ 보증채권자 실체확인 서류 각 1부(요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외국법인인 경우 이에 준하는 서류) 	③실체확인 서류 각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 인감증명서 - 현지법인 설립 증명서 등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등)
④보증서 초안 1부	⑤ 공사계약서
⑥ 개별거래채무약정서 사본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 내부 품의서류 1부(요구시) (해외현지법인과의 공동약정 관련) 	
⑦ 위임장 1부(조합원 대리신고시)	
⑧ 서약서 1부	⑧ 서약서 1부
	⑨ 보증신청서 1부
⑩ 기타 신고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⑩ 기타 신고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 변경신고 절차 : [붙임3] 참조

□ 개별거래약정 체결

- 약정주체 : 조합원, 해외현지법인 (공동약정)



○ 약정 절차

1) 조합

⇒ 개별거래 약정서에 약정금액 및 보증기간 등 기재사항을 기입한 후 본인확인증과 함께 메일을 이용하여 해외현지법인에게 송부(약정서 간인 안내必)

2) 해외현지법인

⇒ 메일로 송부된 약정서 및 본인확인증에 현지법인의 대표자가 해외현지법인 약정인 자격으로 자필 서명

⇒ 자필 서명한 약정서, 본인확인증을 스캔하여 조합에 메일로 송부(불가피한 경우에만 Fax 송부), 약정서 원본 등은 국제 우편을 이용하여 반드시 조합에 송부

3) 국내 조합원

⇒ 메일로 송부된 약정서 사본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날인

(※이후 해외현지법인 서명 약정서 원본과 합철)

○ 약정체결시 제출서류

- 조합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해외현지법인 설립(인수) 증빙서류
- 해외현지법인 :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이 불가할 경우 생략가능하며 현지법인 대표자의 본인확인증으로 갈음)

○ 해외현지법인에 대하여는 해외건설협회 법인현황 등을 조회하여 존속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

□ 보증서 발급

○ 발급 명의 : 해외현지법인 명의

○ 보증금액 표기 : 외화금액 표기 시에는 원화금액과 병행표기

※ 영문보증서 제공은 입찰, 계약, 하자보수, 선급금 보증에 한함

○ 현지법인 서류 심사 등을 감안하여 청구발급 (인터넷 보증 불가)

○ 한국은행 신고필증 원본수령 후 보증신청서와 합철 보관

2. 조합원의 해외지점 보증방법

□ 발급 자격심사

○ 해외지점

- 조합원의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징구하여 지점 등기사항 확인

해외건설공사
보증서 발급안내

□ 한국은행 신고

- 신고근거 : 조합원의 해외현지법인 보증과 동일
- 신고주체 : 각 지점 또는 사무소 (조합원사 대리신고 가능)
- 신고대상
 - 「조합원의 해외지점」과 「국내기업 또는 동기업이 설립한 해외현지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해외공사계약에 대한 보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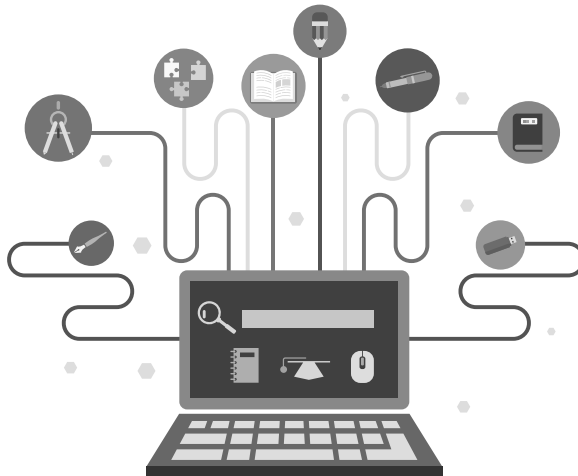
계약 당사자	보증채권자	조합 → 한국은행 신고	조합원 → 한국은행 신고
조합원	국내기업	X	개별거래용 채무약정에 따른 보증계약 신고의무는 발생하지 않지만, 조합원·조합원의 해외지점의 계약관계, 계약 내용 등에 따라 신고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
	국내기업의 해외현지법인	X	
	외국기업	X	
조합원의 해외지점	국내기업	○	
	국내기업의 해외현지법인	○	
	외국기업	○	

○ 신고시기 : 보증서 발급 이전

※ 사후신고(보증서발급 후)시 금융감독원에서 외환금융거래에 대하여 제재조치 발생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위반).

○ 신고방법

- 한국은행 본점 또는 지역본부 방문신고(우편신고 불가).



- 단, 「한국은행 신고(허가)필증 우편 송부 신청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고필증을 우편으로 받을 수 있음
- 처리기간 : 3일 (심사 시 필요자료 추가요구 가능)

○ 준비서류 : [붙임2] 참조

조합	조합원
① 보증계약 신고서 2부	
② 보증사유서 1부	② 조합원의 재무제표 각 1부
③ 조합 실체확인 서류 각 1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 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직인확인증) ◎ 보증채권자 실체확인 서류 각 1부(요구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 외국법인인 경우 이에 준하는 서류)	③ 조합원 실체확인 서류 각 1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 지점설치 신고필증
④ 보증서 초안 1부	⑤ 공사계약서
⑥ 한도거래채무약정서 사본 1부	
⑦ 위임장 1부(조합원 대리신고시)	
⑧ 서약서 1부	
	⑨ 보증신청서1부
⑩ 기타 신고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 변경신고 절차 : [붙임3] 참조

□ 보증서 발급

- 발급 명의 : 조합원 명의¹⁾
- 보증금액 표기 : 외화금액 표기 시에는 원화금액과 병행표기
※ 영문보증서 제공은 입찰, 계약, 하자보수, 선급금 보증에 한함
- 해외지점 서류 심사 등을 감안하여 청구발급 (인터넷 보증 불가)
- 한국은행 신고필증 원본수령 후 보증신청서와 합철 보관

1) 외환거래법상 조합원과 조합원의 해외지점은 각각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되지만, 권리귀속 관계에 있어서는 동일한 법인이므로 조합원의 해외지점이 계약당사자인 경우에도 조합원명의로 보증서 발급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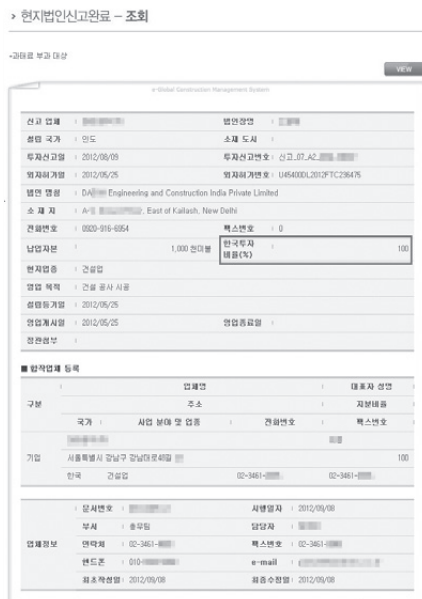
[붙임 1]

현지법인설립(인수)신고서 출력방법

1.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 → “해외건설 e정보시스템”조합원 로그인



2. 좌측 메뉴 중 현지법인신고 → 현지법인신고원료 → 목록에서 설립국가 선택 후 해당국가의 현지법인설립(인수)신고서가 조회되면 출력하여 제출





[붙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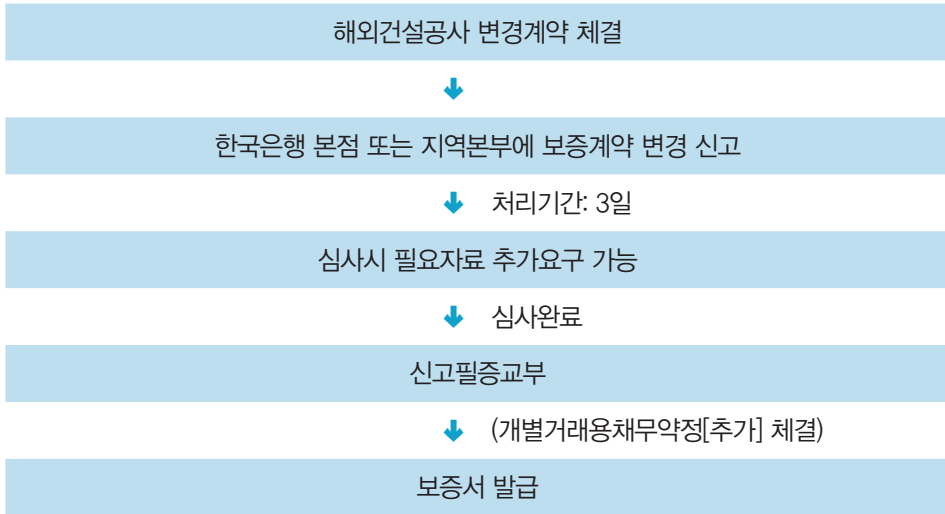
한국은행 보증계약 신고서류 세부사항

- ① 보증계약신고서
- ② 보증사유서 및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채권 회수방안
 - 해당 신고 사유를 정확·상세히 기재 (보증채권자와 조합원, 조합원과 조합원 해외지점/현지법인과의 관계, 공사명, 공사금액 등 보증서 발급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재)
 - 보증채무자가 대지급을 할 경우 보증수혜자에게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조합원의 재무제표, 해외직접투자법인의 연간보고서 등
- ③ 신고인 및 거래관계인 실체확인 서류
 - 신고인(보증채무자) : 조합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직인 확인증)
 - 거래관계인(보증수혜자) : 조합원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 해외지점의 경우 지점설치신고필증, 해외현지법인의 경우 법인 설립증명서(Certificate of Incorporation)등의 법인실체 확인 서류
 - 보증채권자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외국기업인 경우, 법인 설립 인가증(Certificate of Incorporation) 등의 법인실체 확인 서류
- ④ 보증계약서 초안 : 보증서 초안을 의미
- ⑤ 피보증채무 관련 계약서 : 보증신청 대상 공사계약서 등
- ⑥ 보증채무자가 적절한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한도거래용채무약정서(해외지점 발급시)」 또는 「해외현지법인의 공동약정을 위한 개별거래약정서 및 내부품의서(해외현지법인 발급시)」
- ⑦ 위임장(조합원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 ⑧ 서약서
- ⑨ 보증신청서
- ⑩ 기타 신고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한국은행의 추가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름


[붙임3]

변경신고 처리절차

○ 절차도



※그 밖의 준비서류는 신규 해외건설공사 보증계약 신고 시와 동일

- 조합 발급 원보증서에 대한 변경계약 시 업무처리
 - 신규 해외건설공사 보증서 발급방법과 동일
- 타 보증기관 발급 원보증서에 대한 변경계약 시 업무처리
 - 지점상담 필요 



작심삼일이, 초부득삼

작심삼일 초부득삼

중앙지점 손인성 지점장



연초에 퇴근 후 헬스클럽에 가보니 이상하게 평소보다 사람이 많다. 사유를 알아보니 그야말로 일명 말하는 작심삼일의 한 모습이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올해부터는 꼭 운동하겠다고며 헬스클럽에 등록한 사람들. 스포츠 센터들은 마케팅의 일환으로 연초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해서인지 너도 나도 3개월에 얼마, 6개월에 얼마 등등 세일에 들어간다. 지금 등록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아 세일 마감 전 서둘러 등록을 한다. 사우나, 반신욕이라도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나도 헬스는 한 달에 반도 안 가게 되는 것 같다. 현대인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

는 사람들에게 운동은 참 하기 어려운 일이라 생각한다.

특히 나는 선천적으로 팔다리가 약하고 운동신경이 민첩하지 못해 나이 40대에는 어떤 운동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대단히 쉬우면서도 효과가 좋은 운동은 바로 평범한 '걷기'라고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TV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적극 권장한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좋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혈압약 한 알 복용하는 것 외에는 신체에 특별한 변화가 없다는 것 자체가 좋은 현상 아닌가. 물론 짬짬이 시간을 내 동네 산악회 따라 다니며 등산도 하고 트래킹도 하는데, 가족과 관련된 일정으로 대부분의 주말을 바쁘게 보내는 탓에 이런 모임은 한 달에 한 번 참석하기도 어렵게 된다.

헬스클럽도 그렇다. 퇴근해서 집에 도착하면 8시가 다 되는데, 저녁식사를 하고 운동과 사우나를 마치면 자정이 되어버린다. 이러다 보니 헬스장도 매일 찾기는 무리다. 더구나 저녁이면 술자리도 가끔 있어 헬스클럽을 빠지게 되다보면 꾸준함이 떨어진다. 어떤 운동이든 꾸준함이 가장 중요한데, 나에게 맞는 운동이 '걷기'이고, 꾸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침시간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처음 위 TV 프로그램을 접했을 때 나는 감사실에 근무 할 시절이었고, 당시 지방지점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감사를 하던 시기가라 여관생활을 하면서도 새벽에 일어나 낮선 동네를 길 잃어버리지 않고 되돌아 갈 수 있을 만큼만 한 시간 정도 부지런히 걸었다.

당시 76kg쯤 나갔었는데 서서히 체중도 줄었고 건강에 더욱 욕심이 생겨 담배도 끊게 되었다. 부수적으로, 옛날 지점들이 있던 주변은 지리도 많이 익히게 되었다. 일정치는 않았지만 서서히

작심삼일 초부득삼

‘걷기’는 나의 일상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시간이 되었다. 부산·대구 등 지방 근무 때도 새벽에 일어나 걸었다.

작년에 다시 본사 건물로 출근하면서부터는 아침에 5시50분쯤 집을 나선다. 수원 집에서 버스를 타고 사당에 내려 다시 버스를 타고, 시간에 따라 한강공원 잠원 나들목으로 진입해 한강 고수부지를 걷는다. 한남대교, 동호대교, 성수대교를 지나 사무실까지 거의 빠짐없이 걷는다. 7km, 1시간 15분 걸린다. 조금 이르게 도착하여 여유가 있는 날은 영동대교까지 걷기도 한다.

가능한한 아침 걷기를 빼먹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강추위에 강풍이 불어도 걷는다. 기상이 양호한 날은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나 소공원에서 아침 운동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정겹다. 2월 중순에는 압구정에 도착 할 무렵에야 햇빛 한줄기 받을 수 있다. 일출은 한참 전이었으나 서울을 에워싼 산들과 한강변의 드높은 건물, 구조물들로 내가 도착할 무렵에야 영동대교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접하게 된다. 물론 동지 전에는 잠원동에서 출발할 때 어둡기까지 하다.

가끔 한강이 가끔 식상한 날은 도산공원에 들러 안창호 선생님도 뵈고 또 어떤 날은 터미널에서 시내로 걸어와 영동시장으로 방향을 잡는다. 밤새 술을 마시고도 피곤한 기색 하나 없는 젊은이들을 보며 활력을 찾기도 하고 골목 골목 업종이 바뀐 상점도 구경해 가며 지루함을 달래고 복잡한 일상을 다른 상상으로 덮어씌워 오유지족을 즐기기도 한다.

관건은 지루함이다. 매일 같은 일을 한다는 게 지루한 일이지만 건강만큼 소중한 게 없으니 가족과 건강을 위해 걷는다는 생각으로 빼먹지 않는다. 한편 또 다른 문제는 복장 문제이다. 출근복장으로 더구나 구두를 신고 걷기에는 문제가 있다. 겨울을 제외하고는 제법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땀이 난다. 겨울에는 모자와 장갑 뿐만 아니라 물병도 필요하다. 그래서 편안한 복장과 운동화 차림으로 등가방을 짊어지고 걸어와서 대충 씻고 와이셔츠와 구두로 갈아 신는다.

아무리 운동이라 해도 운동화에 방한모 눌러쓴 모습은 직원들 보기에 좋지 않다. 눌린 머리도 물 발라 정리해야 해서 출근도 8시20분 전에 한다.

비슷한 코스로 다니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여 저와 같은 코스로 걸어보시라고 이 글을 올린다. 잠실대교에서 성수대교로 걸어와도 좋다. 오히려 태양이 뒤에 있어 눈부심도 덜하고 바람도 겨울기준으로 뒤에서 분다.

용기를 내어 시작해 보고 필요하신 분은 질문 부탁한다. 어느 다리는 어떻게 올라와 시내로 들어오고 어느 나들목으로 나오면 늦거나 피곤한 날 버스 승차가 가능한지 등 동작대교에서 잠실대교 구간은 자세히 알고 있다.

강북쪽에서 출근하시는 분들은 한강대교들과 가까운 동작동 약수동, 응봉동, 성수동 등에서도 도보출근이 가능할 것 같다.

초부득삼, 마부작침, 우공이산 말이 있다. 모두 꾸준함의 중요함을 강조한 말들이다. 올해 모두들 꾸준히 운동하여 더욱더 건강해지시길 바란다. 🧘